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257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257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2382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4. 12.

판결선고 2024. 5.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23824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C와 피고 사이에 2018. 10. 8.경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558,1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와 같이 선택한다).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20. 9.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주소 보정에도 불구하고 소장 부분 등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2021. 3. 5.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는 처분을 한 후, 소장 부분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제1차 변론기일(피고 불출석)인 2021. 4. 14.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1. 5.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 정보도 다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한편 피고는 예금 계좌가 압류된 이후인 2023. 4. 17.경 제1심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통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2023. 4. 28.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이 제1심 판결 정보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장 부분 또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C은 2018. 9. 4.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23.5%(지연손해금률 23.9%)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2019. 8. 30.까지(360일간) 매일 대출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출 당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차목적물 : 익산시 E건물, G호, 임차보증금 : 50,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8. 4. 10.부터 2023. 4. 9.까지)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2019. 5. 9. D에 위와 같은 근질권 설정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한편, C은 2019. 3. 13.경부터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9. 10. 기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출원리금 등은 합계 20,558,138원(= 대출원금 15,033,736원 + 이자 557,310원 + 지연손해금 4,744,126원 + 연체료 53,666원 + 법적비용 169,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C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아들인 피고가 D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C은 D로부터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2018. 10. 8.경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2)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5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 위 잔존 대출원리금 등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판단

1)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C과 D 사이에 2018. 2. 20.자로 ‘C이 D로부터 익산시 E건물, G호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10.부터 2023. 4. 9.까지로 각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 C의 아들인 피고와 D 사이에 ‘피고가 2018. 9.경 D로부터 익산시 E건물, G호 및 H호를 임차보증금 1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9.부터 2023. 4. 30.까지로 각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 원고가 C을 사기와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결정서 내용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이 ‘C이 D와 합의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혐의 유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 ㉣ 원고의 직원이 위 근질권 설정 통지서 하단에 ‘내용증명 송달부재로 유선 연락(익산 관리이사), C 임대료 전액 반환한 후 현 사업자 피고와 계약 체결’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어머니인 C이 아니라 아버지인 I이 위 임차목적물에서 D와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사업자 및 임차인 명의만 C 또는 피고 앞으로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점, ② 실제로 C은 위 고소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식당 사업자 및 임차인 명의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남편인 I이 그러한 것들을 모두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I은 ‘자신이 세금 체납 문제로 아내인 C 명의로 대출을 받고 사업자 및 임차인 명의로 C으로 하여 식당을 운영하다가, C마저 대출원리금 미지급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자, 부득이하게 위 식당 사업자 및 임차인 명의를 아들인 피고로 변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와 같이 C이 아니라 I이 위 식당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 식당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I이 계속 위 식당을 운영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C 또는 I이 D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받았다거나, 피고가 D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그 계약서 내용과 달리 50,000,000원임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⑥ 오히려 D가 2019. 3. 13. C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20. 1. 8. 'C이 D에, 임차목적물을 모두 인도하고, 8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5,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⑦ 설령 위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 명의 변경 과정에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돈은 피고가 아닌 I이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 내지 ㉢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2018. 10. 8.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C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훈, 판사 정인재, 판사 이의진